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삼성SDI 주식회사(이하“회사”라 칭함)가 관계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권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16.>

제 2 조 (구성)

- ①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01.1.16.>
- ② 위원회는 3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 단, 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개정 2014.7.2.>

제 2 조의 2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3.13.>

제 3 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위원중에서 선출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1.1.16.>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신설 2001.1.16.>
-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1.1.16.>

제 4 조 (해임)

- ① 위원 해임에 관한 결의는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01.1.16.>
- ② 이사회는 위원 해임, 사임, 임기만료 또는 기타 그 직을 계속할 수 없는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 사유발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결원된 위원을 선임하여 충원해야 한다.
- ③ 제2항에서 정한 사유 중 사임 또는 임기만료로 인하여 결원이 생길 경우 해당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으로서의 권리, 의무가 있다. <신설 2001.1.16.>

제 5 조 (회의의 소집)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1.1.16.>
- ②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늦어도 24시간 전에 각 위원에게 문서, 전자문서, 모사전송방식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6.>

제 6 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01. 1. 16.>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 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3. 26.>

제 7 조 (권한)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제 8 조 (의사록)

위원회는 의사진행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과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16.>

제 9 조 (통지의무)

위원회는 결의된 내용을 결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제 10 조 (간사)

-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12.3.26.>
-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위원회 사무전반을 처리한다. <개정 2001. 1. 16.>

제 11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 12 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1.1.16.>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결의방법)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기 2000년 3월 16일 제정

서기 2001년 1월 16일 개정

서기 2012년 3월 26일 개정

서기 2014년 7월 2일 개정

서기 2015년 3월 13일 개정

서기 2015년 3월 13일 개정